
휴대폰 범죄의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ellular Phone Crimes and Its Countermeasures

신성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Seong-Won Sin(fly2moon@wonkwang.ac.kr)

요약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3,938만명을 넘어서 휴대폰 보급률이 81.7%에 이르렀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만연과 대응방안의 미비로 인해 신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유형, 특성, 관련 법규, 그리고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 중심어 : | 휴대폰 단말기 | 휴대폰 콘텐츠 | 휴대폰 범죄 |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cellular phone user rapidly increases. As cellular phone users increase, the crime related cellular phone terminal and contents becomes a newly emerging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the study on cellular phone crime is very rare in Korea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type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cellular phone crime, and a suggestion for efficient countermeasures of cellular phone crime.

■ keyword : | Cellular Phone Terminal | Cellular Phone Contents | Cellular Phone Crime |

1. 서론

2005년 세계 휴대폰 시장의 규모는 약 8억 1,194만대에 이르렀다. Gartner에 따르면 2006년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규모가 2005년 대비 약 10.4% 증가한 약 8억 9,6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처럼 세계의 휴대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를 지나면서 휴대폰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현재 SKT, KTF, LGT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 수가 3,938만 명을 넘어서 4,00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휴대폰 보급률이 81.7%에 이르렀다. 이러한 휴대폰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부문 등에서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세계 정보통신 부문 국가 평가지표인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 DOI) 부문에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 IT 선도국

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 IT 관련기구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2].

그러나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 즉,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만연과 대응방안의 미비로 인해 신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유형, 특성, 관련 법규, 실태를 살펴보고, 휴대폰 범죄에 대한 현행 대책 및 그 문제점을 고찰하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II. 휴대폰 범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유형

휴대폰 범죄가 신종범죄이고, 그에 대한 선행연구가 국내외에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휴대폰 범죄의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또한 휴대폰 자체도 휴대전화, 이동전화, 핸드폰, 이동통신 단말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언론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한다.

휴대폰 범죄를 그 양태와 신종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개념규정을 참고하여 정의하여 보면, 우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위법적인 이득을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소유자 및 서비스 활용자에게 행하는 제반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그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형사적 재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사회적 위법행위”[3]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휴대폰 범죄의 유형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크게 휴대폰 기기 및 서비스의 불법적인 사용과 관련된 범죄, 휴대폰의 불법적인 구매와 관련된 범죄, 휴대폰 스텝문자를 활용한 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 휴대폰 불법사용 관련 범죄

1.1.1 명의도용된 휴대폰의 사용

명의도용이란 제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4]. 이처럼 명의도용된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이라고 부른다. 대포폰은 자동차에서의 대포차와 같은 특징을 갖는데, 즉, 대포차가 실사용자와 차주가 달라서 실사용자가 세금과 벌금 등을 내지 않고 차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포폰은 휴대폰 실사용자와 주인이 달라서 휴대폰 실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기타 개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하다. 명의도용 수법은 사리분별이 부족한 노숙자, 장애인,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미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여 이를 이용해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고 기기를 구입한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취득한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화요금과 기기대금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청구되어 많은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법 외에도 타인의 분실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행사를 통해서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부모형제 등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기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대포폰은 부당한 요금 청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1차적 피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2차적으로 대포폰이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많은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포폰 구매자들은 사기행위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구매한다고 한다. 즉, 대포폰을 대포통장과 함께 유령회사의 설립과 온라인 거래 등에 활용하면 손쉽게 사기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제의 명의를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1.1.2 휴대폰 불법복제

불법복제된 휴대폰을 일명 쌍둥이폰이라고 부른다. 대포폰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반해, 쌍둥이폰은 타인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의 전자적 일련번호(Electronic Serial Number : ESN - 일명 헥사번호) 등 휴대폰 내부정보를 복제해 실제 주인의 전화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포폰과 달리 쌍둥이폰은 실제주인과 전화번호가 일치한다.

휴대폰에는 기본적으로 ESN과 단말기 일련번호 두 가지 고유번호가 있는데, ESN은 휴대폰 기기 내부에 있는 칩에 입력되어 있으며, 단말기 일련번호는 휴대폰 뒷면에 적혀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휴대폰에 이 두 번호가 일치할 때 가입을 승인한다. 휴대폰의 복제에는 ESN과 단말기 일련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데, 시중에는 일련번호를 빼내는 프로그램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5].

쌍둥이폰은 실제 주인에게 범죄자들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요금 및 결제금액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적인 도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휴대폰 번호에 2개의 휴대폰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휴대폰 주인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수신할 때, 쌍둥이폰 소지자에게도 똑같이 전화 및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이 모두 노출되며, 휴대폰 주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하여 위치추적을 당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1.3 타인의 휴대폰 사용

휴대폰 주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였거나 휴대폰 주인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절도한 후, ESN을 변경하여 팔거나, 습득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ESN을 변경해주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기기를 변경하는 것을 일명 브릿지폰이라고 한다.

휴대폰은 첨단 IT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전화통화와 음성 및 문자전송 같은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을 초월하여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디지털멀티미

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DMB) 수신기, 게임기, 무선인터넷 접속 등의 기능까지 추가되어 점점 고가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절도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4-5만원만 지불하면 자신의 기기로 변경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대포폰, 브릿지폰 등 불법적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A/S 센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는 현실 역시 브릿지폰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브릿지폰의 매매는 그 자체가 장물거래이기 때문에 범죄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 연락처, 이메일 어드레스,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상에 노출되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1.2 휴대폰 구매와 관련된 범죄

1.2.1 휴대폰깡

휴대폰깡은 대부분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휴대폰깡은 이들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대폰깡의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휴대폰이 다시 타인에게 대포폰 등으로 팔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휴대폰깡을 한 사람에게 몇 개월 후에 엄청난 금액의 휴대폰 통화요금과 기기대금이 청구되며, 보통 1대만 개통하는 것이 여러 대를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 피해액수가 더욱 더 크게 된다.

1.2.2 박스폰

박스폰은 휴대폰 판매자가 휴대폰을 직접 박스채로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박스채로 되파는 형식이다. 휴대폰깡에서 개설된 휴대폰의 일부가 박스폰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휴대폰깡은 가입자가 범죄자에게 신규 휴대폰을 구매하자마자 50%이하의 가격에 넘기는데 반해 박스폰은 범죄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일반인에게 파는 형식이다. 박스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쉐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일부 박스폰은 개통 후 바로 사용정지를 걸어 놓고 팔리고 하고, 사용정지 되지 않은 연체

휴대폰이 매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박스폰은 범죄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이 그 동안 연체된 휴대폰 요금과 미납된 기기대금 등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1.3 휴대폰 스팸문자와 관련된 범죄

스팸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스팸이란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6].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없거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자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위반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죄행위이지만, 스팸문자는 2차적으로 이를 통하여 불법대출, 이성고제 알선 등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 휴대폰 범죄의 특성

휴대폰 범죄가 다른 범죄행위와 차별되는 특성과 그 심각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휴대폰 범죄는 접근의 용이성, 비인간성, 전문성과 기술성, 광역성과 국제성,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빠른 전파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휴대폰 범죄는 전문적인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도 눈앞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대포폰, 브릿지폰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매우 용이한 특성이 있으며, 명의도용과 휴대폰깡 등의 경우는 사리분별이 부족한 노숙자, 장애인, 노인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미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비인간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복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기술성을 나타내게 된다. 명의도용되거나 불법복제된 휴대폰의 경우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거나 중국 등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의 이동통신망을 쓰는 국가들로 해외까지 반출되기 때문에 광역성과 국제성의 특성이 나타난다[7].

한편, 스팸문자의 경우는 휴대폰을 매개로 하여 하여 형성되는 불가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띠게 되며, 휴대폰 통신망은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을 나타낸다. 끝으로 스팸문자는 단 한번의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전파성을 지닌다[8].

3. 휴대폰 범죄 관련 법규

표 1. 휴대폰 범죄 관련 법규

조 문	규제 내용	처 벌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3년이하의 징역 /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절도	6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10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3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이하의 징역 / 300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7년이하의 징역/1500만원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19조 / 제87조 제1호	불법복제 휴대폰 사용	100만원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46조 제1항 / 제84조 제3호	휴대폰 불법복제 및 의뢰	3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16조	휴대폰 통화의 도감청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3항/제17조	휴대폰 고유번호의 제공	3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	주민등록증 및 번호의 불법적 사용	3년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사전 수신 동의없는 광고전송 금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제58조	구매거부시 전화 등을 통한 구매강요 금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휴대폰 범죄와 관련된 현행 법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휴대폰 범죄 유형인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면, 형법 제239조에서는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주민등록법 제21조에서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 불법복제와 관련된 현행 처벌법규를 살펴보면, 휴대폰을 복제한자와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는 전과법 제46조 제1항(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과 제84조 제3호(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는 전과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및 제87조 제1호(벌칙), 전과법시행령 제29조 제4호(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3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형법 제347조의 2항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불법복제된 휴대폰(쌍둥이폰) 등을 활용해서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파악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를 위반하는 것이다.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고,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하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며, 타인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해당한다.

휴대폰깡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결제시스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무료인증 등을 가장하여 휴대폰 결제를 유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9].

끝으로 휴대폰 스팸문자와 관련된 법규들을 살펴보면, 휴대폰 스팸문자에 대한 일반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이하 규정이다. 이 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과태료)에 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그리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 제23조에서는 다단계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1].

III. 휴대폰 범죄의 실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폰 범죄는 신종범죄이고,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국가 차원에서 정기

적·공식적으로 수집하는 통계 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의 수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공개된 일부 자료를 가지고 그 실태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1. 명의도용된 휴대폰 불법개통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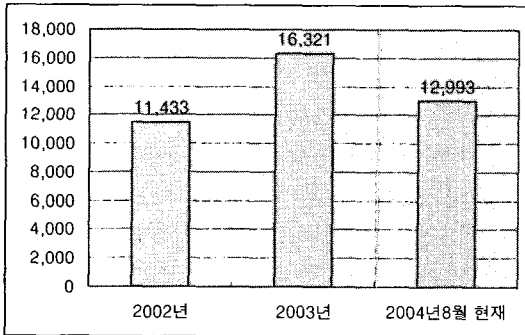


그림 1.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

자민련 류근찬 의원이 2004년 10월 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휴대폰 일명 대포폰 총계는 2002년 11,433건, 2003년 16,321건, 2004년 8월 현재 12,9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는 2002년 5,419건, 2003년 11,009건, 2004년 8월 현재 8,193건으로 이동통신 3사 중에 휴대폰 불법개통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TF는 2002년 3,010건, 2003년 3,012건, 2004년 8월 현재 2,500건으로 큰 변동 없이 3,000여건에 머무르고 있었다. 끝으로 LG텔레콤의 경우는 이동통신 3사 중 휴대폰 불법개통건수가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2002년 3,004건에서 2003년 2,30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 8월 현재 2,300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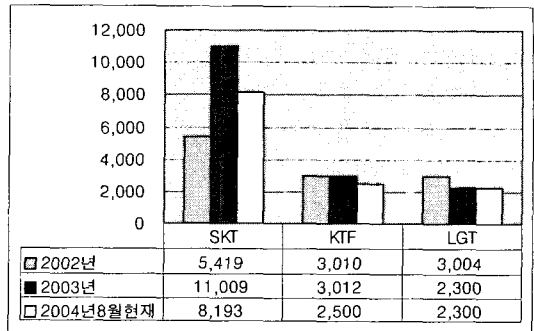


그림 2.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

2.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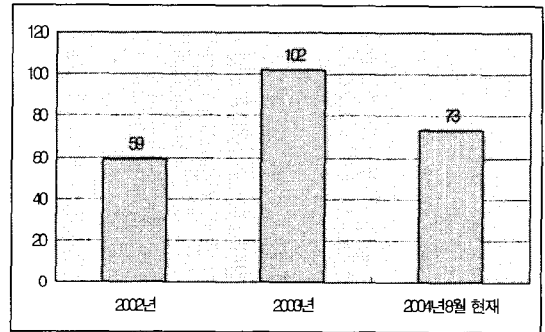


그림 3.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 (단위 : 억원)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액의 총액은 2002년 59억원, 2003년 102억원, 2004년 8월 현재 73억원으로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는 2002년 35억 원, 2003년 74억 원, 2004년 8월 현재 49억 원으로 이동통신 3사 중에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KTF와 LG텔레콤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은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KTF 2002년 11억 원, 2003년 16억 원, 2004년 8월 현재 11억 원, LG텔레콤 2002년 13억 원, 2003년 12억 원, 2004년 8월 현재 13억 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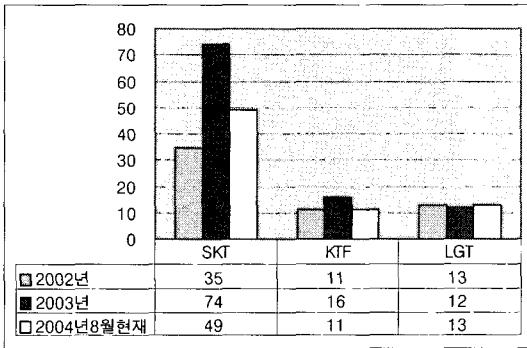


그림 4.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액 (단위 : 억원)

3. 명의도용 피해민원 건수

표 2. 명의도용 피해민원 건수

이동통신사	2005년 7-12월	2006년 1-6월	합 계	민원건수 (10만명당)
SKT	427	353	780	3.0
KTF	282	180	462	4.6
LGT	301	168	469	6.9
KT-PCS	95	62	157	6.1
합 계	1,105	763	1,868	4.7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 센터에 명의도용 피해를 접수한 민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총 1,868건이며, 2005년 하반기에 대비하여 2006년 상반기에 31.0%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월 100여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만 명당 명의도용 피해민원 건수를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비교하면 LG텔레콤이 6.9건으로 가장 높았고, KT-PCS 6.1건, KTF 4.6건, SK텔레콤 3.0건 순으로 나타났다[4].

4. 콘텐츠별 휴대폰 스팸문자 수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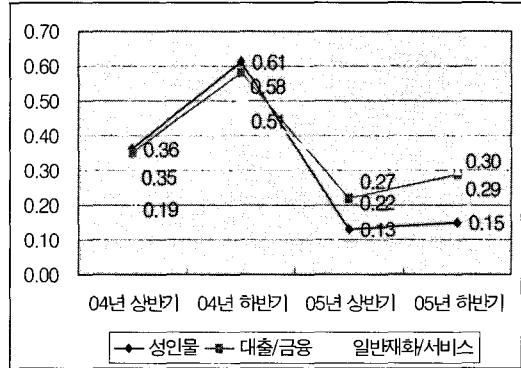


그림 5. 콘텐츠별 휴대폰 스팸문자 수신량 추이 (단위 : 통수/10일)

휴대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신한 스팸문자의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크게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성인물, 대출 및 금융 등으로 분류되었다[6]. 2004년 상반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콘텐츠별 휴대폰 스팸문자 수신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음란물 관련 스팸은 콘텐츠 중에서 2004년에 가장 많이 온 스팸문자였으나, 2004년 하반기에 1일 평균 0.61통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05년 상반기 이후에는 0.15통 이하로 급감하여, 2005년에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적게 온 스팸문자였다. 이는 성인음란물 관련 스팸 문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채 등을 권유하는 대출 및 금융 관련 콘텐츠를 보내온 스팸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2위였지만, 가장 많이 온 스팸문자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이 온 스팸문자였다. 대출 및 금융 관련 스팸 역시 2005년에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끝으로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권유하는 스팸은 2004년 상반기에는 0.19통으로 가장 적은 콘텐츠였지만, 2005년 하반기에는 0.30통으로 가장 많이 온 콘텐츠였다.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스팸도 2004년 하반기에 정점을 이룬 뒤 2005년 상반기에 감소하였지만, 다른 콘텐츠에 비해 그 폭이 크지 않았다.

IV.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1. 정부적 차원의 대책

우선 정부는 휴대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회사와 유관기관을 규제하고, 제도적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화하고 확대시행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휴대폰 인증시스템의 도입 및 확대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휴대폰 인증시스템이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전자적 일련번호(ESN) 및 단말기 일련번호 외에 통신사업자의 인증시스템이 부여하는 별도의 인증키(Authentication Key)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복제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증키가 내장된 휴대폰을 생산해 왔으며, 해외에 수출도 해왔으나, 국내에는 인증키를 도입하면 이동통신망에 2배 이상 과부하가 걸리고 엄청난 시설 투자비가 신규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시스템의 도입을 미루어왔다. 이러한 휴대폰 인증시스템이 도입되면 휴대폰이 이동통신망에 연결될 때마다 통신망의 인증센터가 부여한 별도의 인증값(Shared Secret Date : SSD)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복제된 단말기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며, 현재의 기술로는 ESN과 달리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인증값은 단말기와 인증센터 간에 교환되면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복제가 된다고 해도 복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 휴대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인증키가 내장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인증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던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모든 가입자가 그 혜택을 누려 휴대폰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살펴보면, FMS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통화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중복통화 검색, 통화간 발신위치 비교, 통화량 임계치 분석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체계이다.

이동통신사는 FMS에 1일 3회 이상 불법복제 휴대폰에 의한 통화 징후를 감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담원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통신사의 통보내용을 조사해 위법시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13]. 이러한 FMS만 잘 운영되어도 휴대폰 불법복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고객의 정보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FMS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 및 협조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고액의 요금부과되는 무선데이터, 국제로밍, 정보검색기능 등에 대해서도 FMS 검색기능을 확대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 스팸문자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해의 수준에 이르렀는데[14], 휴대폰 스팸문자는 인터넷의 스팸메일에 비해 불법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신한 광고의 내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야 하며, 음성광고의 경우에는 녹음해야 하는 등 불법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까다로워 그 단속이 곤란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휴대폰 스팸문자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의 증거를 확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과도 불법적인 스팸문자 근절에 공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해서 공조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휴대폰 스팸문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 국번없이 1366)에 접속하여 불법스팸문자에 대하여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많은 홍보와 스팸문자 방지 캠페인이나 스팸금지 마크 부착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발송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15].

2. 사회적 차원의 대책

휴대폰 범죄의 방지에 있어서 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기업체, 유관 조직,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 차원의 대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이다. 휴대폰 불법복제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인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2006년 3월 15일에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복제휴대폰 1대당 10만 원으로 수거된 복제휴대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16].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2006년 6월 한 달간 19명이 총 1,12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17].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도가 단기적·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장기적·상시적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불법복제 휴대폰의 제작·의뢰·사용, ESN의 거래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휴대폰깡 등 휴대폰 관련 범죄 전반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안, 휴대폰 범죄의 유형과 수법, 피해신고방법 및 피해구제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꾸준한 홍보 및 계몽활동이 요구된다[18]. 또한 휴대폰깡, 명의도용 등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3. 개인적 차원의 대책

위에서 살펴본 정부적·사회적 대책들이 휴대폰 범죄의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원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이에 앞서 개인의 주의와 각성 역시 휴대폰 범죄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포폰이나 브릿지폰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을 당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분

실과 도난 방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도용 역시 개인이 평상시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개인정보나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두판매점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개인정보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http://www.msafar.or.kr>)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될 때 이메일 및 단문문자메시지(SMS)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할 경우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명의도용 예방의 첩경이다. 셋째,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넷째, 통신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4].

V. 결론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유형, 특성, 관련 법규,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적 차원에서는 대포폰, 쌍둥이폰, 브릿지폰 등 각종 휴대폰 범죄의 원인이 되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대폰인증시스템과 통화도용방지시스템의 도입과 적극적인 확대시행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공해에 가까운 피해를 초래하는 휴대폰 스팸문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

신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유관 기관 및 업체와의 협조가 요구된다.

둘째, 휴대폰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시행과 다양한 홍보와 계몽 활동의 실시를 제안한다.

끝으로, 휴대폰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주의와 각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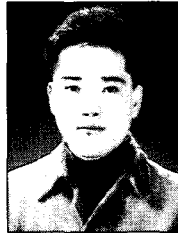
[1] 김민식, "2005~2006 이동전화단말기 시장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2호, p.23, 2006.
 [2] 디지털데일리, 2006년 7월 5일자.
 [3]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p.181, 1993.
 [4]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6년 7월 3일자.
 [5]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6]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2006.
 [7]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8]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pp.69-72, 2000.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10]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1세기사, 2005.
 [11] 한상암, 김정규, "스팸메일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제4권, 제1호, p.339, 2006.
 [12] 연합뉴스, 2004년 10월 7일자.
 [13]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5년 2월 16일자.
 [14] 김경제, "핸드폰광고의 법률적 해석", 사법행정, 제44권, 제2호, pp.25-27, 2003.

[15] 정완,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6]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6년 3월 15일자.
 [17] 한겨레신문, 2006년 6월 11일자.
 [18] 정완,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저자 소개

신 성 원(Seong-Won Sin)

정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경찰학석사)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경찰학박사 과정수료)
 - 2005년 8월~현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경찰조직관리, 신종범죄, 청소년비행